

우정인재개발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우정인재개발원에서 구내식당 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근로자(우정실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3.

우정인재개발원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우정실무원 (공무직/조리원)	1명	우정인재개발원 (충남 천안시)	○ 구내식당 음식조리 및 운반 보조 ○ 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청소·소독 등 집단급식 관련 업무 ○ 기타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도하는 사항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우정실무원)

- *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60세)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6:00~15:00 혹은 09:00~18:00)

- * 식수 및 행사에 따라 연장근무 발생할 수 있음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라. 보수

○ 기본급: (일급) 82,560원/2026년

- 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기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마. 휴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3. 응시 자격

- 가. 응시연령: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
 - 「식품위생법」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법정 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며, 건강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산업기사 등)

다.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업무 경험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가. 제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배점 \ 심사항목	응시요건 충족도	자기소개서 성실성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100점	20점	30점	20점	20점	10점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 가. 원서교부: 우정인재개발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나. 접수기간: 2026. 7. 15.(수) ~ 7. 2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접수처: 우정인재개발원 운영지원팀
-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운영지원팀 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우 31068)
 -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글자 표기
 -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응시원서의 분실 등 서류 미접수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접수: tax03000070@korea.kr, 제출서류는 PDF, JPG파일로 제출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모집공고: 2026. 7. 13.(월) ~ 7. 20.(월)
-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6. 7. 15.(수) ~ 7. 20.(월)
-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공고: 2026. 7. 24.(금) 예정
- 라. 면접시험: 2026. 7. 30.(목) 예정
-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3.(월) 예정
- 바. 위 일정은 응시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kphi.koreapost.go.kr>)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정인재개발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정인재개발원 방문신청, 이메일(tax0300007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우정인재개발원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우정실무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선발인원의 3배수 내)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인재개발원 운영지원팀(☎041-560-5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